

【논문】

清朝의 종실족장 선발과 족장의 종실사회 관리

김준영*

| 차

례 |

- I. 머리말
- II. 종실족장의 관료화
- III. 종실족장의 八旗행정 임무와 권한
- IV. 맺음말

국문초록

만주공동체가 팔기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층사회조직도 니루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도 니루에는 좌령 이외에 각 종족(宗族)을 대표하는 족장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입관 후 니루에서 족장의 역할 및 권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기존 족장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족장의 제사 주관, 재산관리, 족보편찬, 양자문제관리 등 종족 내부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였다. 만주족장도 종족의 수장으로써 종족 내부 활동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만주족장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니루에서 다양한 공적인 임무를 맡았다. 족장의 공적인 임무와 권한은 그들이 단순히 혈연집단의 수장이라는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만주공동체의 새로운 기본사회조직이 된 니루에서 족장의 공적인 역할 및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만주공동체는 팔기 입기(入旗)시기, 니루의 종류에 따라 계층이 구분된다. 만주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 중 특히 종실과 일반 기인은 호적편성, 니루 구성, 집단 관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연구의 범위를 종실족장에 한정해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는 청조의 당안(檔案)자료를 이용하여 종실의 계층분화, 족장 선발 방식의 변화, 족장의 팔기행정 참여 중 임무와 권한에 대해 연구하였다. 족장선발의 주요원

* 충남대학교 사학과 강사.

칙은 종족 내 혈연적 지위가 아닌 관품이었고 황제를 알현한 후 임명되었다. 정식 관료가 아닌 종실족장 선발에 황제가 직접 관여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종실집단에 대한 황제의 영향력 강화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니루에서 족장이 실질적으로 죽인을 관리하고 팔기 행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었다.

| 주제어: 만주공동체, 종실, 족장 선발, 팔기행정, 니루, 족장의 역할

I. 머리말

족장하면 부족 혹은 씨족사회의 수장과 같은 비교적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나 족장이 단순히 부족사회의 전유물은 아니다. 족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할 및 지위가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청대 만주족장이다. 만주공동체는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을 중심으로 동북지역의 여러 種族을 통합하여 형성된 새로운 多種族 공동체이다.¹ 후금의 건립자인 누르하치는 만주공동체를 설립한 이후

1 먼저 본고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만주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만주는 중국의 동북지역을 지칭하는 地名으로도 쓰이지만 청대에는 기인(旗人)으로도 불리는 사람들로 팔기에 입기하지 않은 漢人과 구분하는 명칭이다. 만주에는 입관 전·후 팔기에 입적한 種族 근원이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었는데 팔기를 통해 제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만주공동체'는 청대 種族적 근원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룬 집단을 의미한다. 만주공동체 범주 대해서는 학계에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王鐘翰과 徐凱 등은 만주공동체는 건주여진을 중심으로 몽골인, 한인 그리고 조선인까지 포함되는 다민족 공동체로 규정하였다. 王鐘翰, 1987, 「關於滿族形成中的幾個問題」, 『社會科學戰線』1; 徐凱, 2015, 『滿洲認同“法典”與部族雙重構建: 十六世紀以來滿洲民族的歷史嬗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마크 C. 엘리엇(Mark C. Elliott), 孫靜, 張佳生 등 학자는 만주공동체를 여진의 후손과 몽골인으로 한정하여 만주공동체 중 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마크C. 엘리엇(Mark C. Elliott), 이훈·김선민 역, 2009, 『만주족의 청제국(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푸른역사; 孫靜, 2005 「滿族形成的再思考——清中期滿洲認同意思研究」, 復旦大學博士論文; 張佳生, 2010, 「八旗牛錄建制與滿洲之民族整合」, 『沈陽故宮博物院院刊』10. 참고: 이 밖에 杜家驥는 그의 논문 「清代滿族與八旗的關係及民族融合問題」(『社會科學戰線』6, 2016)에서 만주인의 범주는 단순히 民族旗分로 구분할 수 없고 그들이 滿洲缺의 관직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로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만주공동체 형성시기에 관해서는 만주공동체의 구성을 여진, 몽골, 동북 변경 지역의 種族으로 한정하였던 마크C. 엘리엇(Mark C. Elliott) 등은 '만주'라는 명명에서 민족정체성이 이미 형성되고 팔기를 통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王鐘翰, 張傑, 張丹卉, 郭孟秀, 파멜라 크로스슬리(Pamel K. Crossley) 등은 만주공동의 정체성이 여진과 주변의 여러 민족을 통합한 후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王鐘翰, 앞의논문; 張傑, 張丹卉, 2003年(2013重印) 『清代東北

대외적으로는 여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동북지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몽고인 한인 등 비여진 출신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대내외적으로 통치기반이 안정되자 천총9년(1635)년 홍타이지는 ‘滿洲’라는 본래 사용하던 자신들의 부족 명칭을 대외적인 공식명칭으로 공포하였다.²

만주인이 팔기에 편입되기 이전의 기본 사회단위는 만주어로 ‘무쿤(mukvn)’ 혹은 ‘가산(gaxan)’으로 불리는 집단이었다.³ 만주어 무쿤은 동성혈연집단인 할라(hala)가 분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지연을 기반으로 하는 씨족 집단을 의미한다. 가산은 향촌 혹은 촌락을 의미하는데 가산은 동성 무쿤 혹은 이성 무쿤집단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무쿤과 가산에는 각각 조직을 통솔하는 수장이 있는데 무쿤의 수장을 만주어로 무쿤다(mukvn i da, 族長)라고 하였고 가산의 수장은 만주어로 가산다(gaxan i da, 村長)라고 하였다. 청조 통치자는 기층조직인 가산 혹은 무쿤을 니루로 편성하여 만주공동체의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자발적으로 청조에 투항하여 니루로 편성된 가산 혹은 무쿤은 그 집단의 원래 수장이었던 村長 혹은 族長이 니루의 수장⁴이 되었다.

만주공동체가 팔기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층사회조직도 니루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도 니루에는 니루의 수장인 佐領 이외에 각 무쿤을 대표하는 족장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입관 후 니루에 남아있던 족장의 역할 및 권한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기

邊疆의滿族(1644-1840), 遼寧民族出版社; 徐凱, 앞의 책; 파멜라크로스리(Pamel K.Crossley), 陳兆肆譯, 董建中校, 2016, 『孤軍: 滿人一家三代與清帝國的終結(Orphan Warriors: Three Manchu Generations and the End of the Qing World. New Jersey), 人民出版社, p. 19.

2 趙志強는 「滿文原檔」 연구를 통해 홍타이지가 ‘만주’라는 종족명칭을 정식으로 선포하기 전에 ‘만주’라는 부족명칭이 이미 쓰이고 있음을 밝혔다. 趙志強, 2019, 「滿洲族稱源自部落名稱——基於「滿文原檔」的考察」, 『紀念鄭天挺先生誕辰120周年暨第五屆明清史國際學術討論會會議』, 南開大學, 140쪽.

3 본문에 사용된 만주어 전사표기는 중국의 만주어 전사 표기법인 太清 표기법을 따른다.

4 니루의 수장은 만주어로 니루어전(niru ejen, 牛錄額真), 漢語로는 좌령(佐領)이라고 한다. 이하 좌령(佐領)으로 표기.

존 족장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족장의 제사주관, 族産관리, 족보편찬, 過繼立嗣 결정 등 宗族 내부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있다. 아울러 족장의 권한은 종족 내부의 혈연적 지위에 근거하며 宗族會議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⁵ 만주족장 또한 宗族의 수장으로써 종족 내부 활동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만주공동체 속 족장은 니루에서 다양한 공적인 임무 및 권한을 가졌다. 만주공동체 족장의 공적인 권한과 역할은 족장이 단순히 혈연집단의 수장이기 때문이라는 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만주공동체의 새로운 기본사회조직이 된 니루와 관련하여 족장의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주공동체는 다양한 種族을 통합하여 형성된 多種族 공동체이다. 이와 더불어 만주공동체에는 入旗시기, 니루 종류에 따른 명확한 계층 구분이 존재한다. 만주공동체의 계층 구분은 旗籍을 통해 세분화되었고 명문화되었다.⁶ 따라서 만주공동체의 신분은 제한적 계층 이동만 가능한 불가역적인 것으로 대대로 세습되었다. 만주공동체의 다양한 계층 중 특히 종실집단은 일반과 구분되어 독립된 호적과, 니루로 관리되었다.⁷ 본고는 만주공동체의 다양한 계층 중 종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종실집단 내의 계층구분, 종실족장 선발과 선발대상의 변화, 종실족장의 종실사회 관리에서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 謝肇華, 1993, 「從一份「家訓」看清後期滿族的族長制」, 『滿族研究』1; 何海龍, 2002, 「清代滿族民間宗法制度基本形態淺析」, 『滿族研究』4; 馮爾康, 2008, 「清代宗族族長述論」, 『江海學刊』5; 陳瑞, 2008, 「清代徽州族長的權力簡論」, 『安徽史學』4; 이매뉴얼C.Y.쉬, 조운수·서정희 역, 2013, 『근현대중국사-상: 제국의 영광과 해체』, 까치, 93쪽; 馮爾康, 2013, 『中國古代的宗族和祠堂』, 商務印書館, 113-115쪽; 徐雪梅, 2018, 「清朝八旗制度中的族長」, 『人民論壇』2; 常建華, 2017, 「有關明清家族制的是是非非」, 『古代文明』2, 142-144쪽.

6 팔기의 호적종류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傅克东, 1983, 「八旗戶籍制度初探」, 『民族研究』6.

7 종실의 모든 호적은 종인부에서 관리하였고 건륭제때 종실은 일반 기인과 분리하여 종실니루를 조직하였다. 종실내부의 계층 구조 및 그 경제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賴惠敏, 『清皇族的階層結構與經濟生活』(遼寧民族出版社, 2010)을 참고할 수 있다.

II. 종실족장의 관료화

1. 종실의 계층 구분

崇德元年(1636) 흥타이지는 종실의 범주를 할아버지 塔克世의 직계 자손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塔克世의 직계의 자손은 종실, 塔克世 형제의 자손은 覺羅로 구분되었다. 종실과 각라는 사용할 수 있는 요대의 색깔에 따라 黃帶子와 紅帶子로 각각 명명되었는데 이는 두 집단 간에 표면적 계층 구분이 분명해졌음을 의미한다. 順治9년(1652) 청조는 종실과 각라의 호적등재 절차도 구분하였다. 鎮國將軍이하 宗室 자녀의 출생은 족장이 종인부에 보고하여 黃冊에 등재하였다. 각라 자녀의 출생은 각 기의 수령이 종인부에 보고한 후 紅冊에 등재하였다.⁸ 즉 청조의 황실은 흥타이지 때 종실과 각라로 구분된 이후 제도적으로 두 집단 간 계층 구분이 체계화되었다. 건륭제 때 이르러 종실 내부에서도 종실과 각라를 계층적으로 구분한 것처럼 혈연적 親疏遠近에 따라 종실을 近支宗室과 遠支宗室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近支宗室은 강희제의 직계자손을 의미하였다. 近支宗室과 遠支宗室의 표면적 차등은 자손의 이름에 쓸 수 있는 향렬자 및 편방이었다.

(가경)13년 유지: 본래 종실의 이름을 지을 때 글자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오직 황제와 가까운 지파만이 같은 편방을 쓸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자는 함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종실 綿瑚가 玉字를 편방으로 쓴 것은 아주 옳지 못한 것이다. 玉字 편방은 永字 향렬 중에서 지파가 먼 자는 이미 감이 사용하지 못한다. 하물며 綿字 향렬자를 쓰는 자는 더욱 이러한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⁹

8 (乾隆)『欽定大清會典則例』卷1, 「宗人府」.

9 (嘉慶)『欽定大清會典事例』卷1, 「宗人府」, 「天潢宗派」, 「命名」: (“嘉慶)十三年諭: 向來宗室命名取用字樣, 惟天潢支派最近者偏旁相同, 此外即不得混用, 乃宗室綿瑚之名取用玉旁大屬非是, 玉

이처럼 청 황실은 종실의 이름을 통해 종실 간 계층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또한 황제는 近支宗室에 해당하는 종실만 직접 배필을 정해주었다. 따라서 청조시기 황제가 직접 배필을 정해주는 집단의 변화를 통해 近支宗室 범주 변화를 알 수 있다.

중전에 황고 고종순황제(건륭제)께서 매번 팔기 秀女를 선발할 때 모든 파견된 왕들에게 그들의 배필을 정하기 위해 성조인황제(강희제)의 후손 24개 近支宗室지파의 이름을 조사하여 보내게 하였다. 지금 짐이 秀女를 선발하는데 마땅히 이 규정에 따라 세종헌황제(옹정제)의 후손인 近支宗室 안에서 세시에 따라 배필을 정해주겠다. 이를 파견된 왕들에게 전하여 이후 마땅히 종실들의 이름들을 적어서 보내게 해라. 오직 세종헌황제(옹정제)의 후손인 近支宗室의 이름을 녹패에 적어서 규정에 따라 보내라. 이것으로 선발된 秀女를 배필로 배정하는 것을 영원한 규정으로 삼는다.¹⁰

이상 유지내용을 통해 건륭제 시기 近支宗室의 범주는 강희제 직계지파의 후손이었다. 가경제때에는 近支宗室의 범주가 옹정제의 직계후손으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종실집단이 점차 비대해짐에 따라 황제와의 친소원근을 기준으로 近支宗室의 범주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도광제시기가 마지막으로 이때 近支宗室의 범주는 건륭제의 직계자손이었다.¹¹

청대 일반적으로 양자를 들이는 사회 관행은 가까운 부계혈통 중에서 양자를 찾는 것이다. 가까운 집안에 적합한 후손이 없을 경우에는 大功, 小功, 緦麻의 순으로 양자 후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만약 이 안에서 적합한 자를 찾지 못할 경우 보다 먼 지파나 同性 안에서 찾았다.¹² 만주인은 동성집단 내

字偏旁即在永字輩中支派稍遠者,已不敢取用,況在綿字輩者更何得以之命名.”

10 『清仁宗實錄』卷80, 嘉慶6年3月2日.

11 『清宣宗實錄』卷28, 道光2年正月6日.

12 王躍生, 2016, 『清代立嗣過繼制度考察: 以法律、宗族規則和慣習為中心』, 『清史研究』2, 58쪽.

에서 적합한 자를 찾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니루 안에서 계층이 같은 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다.¹³ 近支宗室과 遠支宗室은 상호간에 양자를 들이지 않았다. 近支宗室 중 遠支宗室의 양자가 된 경우는 강희제의 열여섯 번째 황자인 允祿이 유일하다. 역으로 遠支宗室이 近支宗室의 양자가 된 경우는 咸豐4년에 처음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近支宗室 가운데 양자를 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선택한 것 이다.¹⁴ 이처럼 近支宗室과 遠支宗室은 표면적 계층구분을 넘어 종실사회에서 관념적으로도 두 집단이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실은 近支宗室과 遠支宗室의 구분 이외에 거주지역 및 이주시기에 따라 또 계층이 구분되었다. 가경제 시기 청조는 북경의 閑散宗실과 犯法宗실을 성경으로 이주시켜 거주하게 하였다. 먼저 嘉慶17년(1812) 성경으로 이주시킬 종실들이 안착할 宗室營을 만들었고 이듬해 북경의 閑散宗실을 이곳에 거주하게 하였다.¹⁵ 그리고 嘉慶20년(1815) 성경으로 이주해온 종실을 관리하고 교화시키기 위해 移居宗室 중 正·副족장 및 學長을 선발해 관리시켰다.¹⁶ 이후 청 황제는 犯法을 저지른 종실을 죄의 경중에 따라 성경뿐만 아니라 흑룡강까지 유배형식으로 이주시켰다. 죄를 짓고 이주해온 移居宗室은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이 있었는데 가령 移居宗室은 북경에 들어오기 위해선 婚喪 이외에 다른 일은 모두 종인부에 먼저 그 사실을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¹⁷ 道光20년(1840)에 이르면 청조는 嘉慶20년(1815)을 기준으로 성경

13 檔號:04-02-002-000155-0055, 「戶部給事中兼護軍統領巴圖」, 雍正7年9月11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14 王新璋, 2016, 「晚淸近支宗室過繼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11-86쪽.

15 「宗人府宗令綿課等為查明移住盛京宗室戶口人數並酌議章程事奏折」, 嘉慶18年6月初9日, 「嘉慶朝宗室移住盛京檔案(上)」, 『歷史檔案』2, 2019, 32-33쪽; 가경18년 경성 내 한산종실 70戶(275人)와 수행남녀노복(隨帶男女仆) 160명, 총435명을 9월6일부터 세 차례 나누어 성경 宗室營으로 이주 하게 하였다.

16 『淸仁宗實錄』卷306, 嘉慶20年5月20日.

17 『淸宣宗實錄』卷86, 道光5年7月26日.

의 종실을 新·舊종실로 구분하였다.¹⁸ 앞서 嘉慶18년 북경 종실70호를 성경으로 이주시켰지만 이들은 대부분 범법자가 아닌 생활이 곤궁한 閑散종실이였다. 따라서 성경新·舊종실 구분의 경계를 가경20년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도광제는 嘉慶20년 이후 성경으로 이주한 종실은 宗室營의 族長과 學長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였다.¹⁹ 성경의 종실족장이 봉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宗室營의 主事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 정책의 목적이 성경의 新·舊종실 간에 계층적 차등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2. 종실족장 선발방식의 변화

종실족장 선발에 대한 청조의 개입은 황제와 혈연적관계가 비교적 멀고 지위가 낮은 성경종실부터 시작되었다. 옹정9년(1731) 황제는 성경장군에게 성경의 종실·기오로 족장을 教長 중에서 선발하게 하였다.²⁰ 그리고 옹정12년(1734)에는 북경의 종실 및 기오로의 족장 선발에도 직접 개입하였다.

주접한 것.

양황기의 만주기 부도통 대신 기오로의 佛保(foboo)가 삼가 아뢰었습니다. 종실 기오로의 족장을 임명하는데 결코引退한 후 주접하여 임명되게 하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청하길 족장은 한 무쿤의 사람들을 안정 및 조화시키고(그들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살펴보면 팔기의 종실 기오 족장 안에 나이가 어리고 나약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무쿤의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교육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여전히 상호간에 소송을 제멋대로 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지금 모든 종실 기오로의 족장을 종인부에 보고하고 하나씩 검사하여 무쿤의 사람들을 안정, 조화시켜 단속하고 관리하는데 능

18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卷5, 「宗人府五」, 「授官」, 「補放族長教長」.

19 孟繁勇, 2016, 「清代宗室覺羅發遣東北述略」, 『社會科學戰線』8.

20 (嘉慶)『欽定大清會典事例』卷5, 「宗人府五」, 「授官」, 「補放族長教長」.

한 자들만 남깁니다. 나이가 어리고 족장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은 물러나게 하고 각 무쿤의 사람 중 마땅히 품행이 단정하고 무쿤의 사람을 안정시키고 관리 하는데 능한 자를 두 명 선발하여, 하나는 정 하나는 부로 삼아 종인부에서 켜 시킨 후 주접하여 임명을 청하게 합니다. 이 같이하면 각 무쿤 안에서 훌륭한 무쿤의 수장이 선발되어 친척 간에 소송을 제멋대로 하는 습속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 각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성군의 엄중한 은혜를 막는 종실 기오로 등을 교화시켜 아주 인자한 뜻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를 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성군의 明監을 청합니다. 삼가 주접 하였습니다.

용정12년5월29일에 유지: 종인부의 왕 등에게 전달해라.²¹

본 주접에서 양흥기 만주 부도통 佛保는 족장의 임무는 종족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교화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족장 안에 나이가 어리고 나약

21 檔號:03-0170-0014-003, 「奏交宗人府揀選宗室覺羅之族長折」, 鑲黃旗滿洲副都統 佛保, 雍正12年5月19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wesimburengg.

kubuhe xanggiyan i manju gv sai meiren i janggin amban gioroi foboo gingguleme wesimburengge. uksun gioroi mukvn i da sindara de umai beyebe tuwabume wesimbufi sindara ba akv, gingguleme gvnici mukvn i da serengge emu mukvn i urse be hvwaliyambume acabume bargiyatame kadalara baita be alihabi. tuwaci jakvn gv sai uksun gioroi mukvn i da i dorgi se asigan uhuken eberi mukvn i urse be hvwaliyambume tacibume muterakv ningge bisire turgunde kemuni ishunde habxara balai baita dekdebure be akv obume muterakv, amban mini mentuhun gvnin de ne bisire uksun gioroi mukvn i da sebe zung r'in fu yamun de afabufi emke emke i ilgame tuwafi mukvn i urse be hvwaliyambume acabume bargiyatame kadalara de mutere urse be sonjofi bibureci tulgiyen se asigan mukvn i da de muterakv urse be nakabufi, meni meni mukvn i dorgi niyalma ojoyabun tob mukvn i urse be bargiyatame kadalame muterengge be juwe sonjofi emke be cohome emke be adabume zung r'in fu yamun ci gaifi beyebe tuwabume wesimbufi sindaki, uttu ohode meni meni mukvn i dorgide sain mukvn i da sindaci giranggi yali dolo ishunde habxara balai baita dekdebume yabure tacin be halabufi teisu teisu sain de ibeneci ombime enduringge ejen i ujen kesi isibume uksun gioro sabe hvwaxabume ujire ten i gosingga gvnin de acabuci ojoro gese, yabubuci acara acarakv babe enduringge ejen genggiyen i bulekuxereo, erei jalin gingguleme wesimbuhe. hvwaliyasun tob i juwan juweci aniya sunja biyai juwan uyun. hvwaliyasun tob i juwan juweci aniya sunja biyai orin uyun de hese zung r'in fu yamun i wang sade afabu sehe.

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무쿤의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교육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여전히 상호간에 소송을 제멋대로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일부 자질이 부족한 족장이 임명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나이가 어리고 족장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을 물러나게 하고”에서 보듯 족장 선발에 명확한 원칙이 없고 혈연적 지위에 의거해 종족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조는 족장의 임무를 감내할 수 있는 자를 뽑기 위해 종족에서 추천한 자를 종인부에서 검증 한 후 황제의 리뵐을 거쳐 선발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대해진 종실집단을 관리하기 위해 종실은 일반기인과 니루를 따로 편성하고 족장 위에 총족장을 만들어 종실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大學士 領侍衛內大臣 忠勇公大臣 傅恒(fuheng) 등 삼가올린 주접……,경성의 종실들도 원래는 결코 總族長을 선발하여 전담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건륭21년 종인부에서 팔기의 종실 왕 이하 3세 이상 2천여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담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지를 청하여 주접하였고, 鑲黃旗와 正黃旗는 각 한명 나머지 旗는 각 기마다 두 명씩 總族長을 임명하고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건륭25년 신들이 유지에 따라 종인부와 함께 상의해서 논의하여 경성의 모든 종실을 모든 기의 니루, 보오이 니루에서 이동시켜 16개의 종실 니루에(배속하고) 각각 좌령을 추가하여 임명하여 관리하도록 해달라고 주접하였고(이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總族長을 임명하는데 종실 중 능히 관리할 수 있는 大臣 혹은 官員 안에서 선발하고 임명합니다. 종실니루의 좌령을 임명하는데 지금 관직이 4품 이상인 관원, 좌령 안에서 선발하여 임명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5품 관원 안에서 선발하고 4품衛의 頂戴를 하사 받게 하고, 원래의 품급대로 봉급을 받고 니루의 일을 관리하게 합니다. 결코 봉록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종인부에서 성경의 모든 400여명의 종실, 기오로를 그곳의 모든 기의 니루에서 이동시키고 總族長 한명, 매 翼마다 각 한 명의 종실니루 좌령을 선발합니다. 성경의 장군에게 명하여 陵에서 제사를 맡아 거행하는 종실 章京 중 덕망이 있고 관리 하는데 능한 자를 매 결 마다 한 사람을 추천하여 보내오게 하고 종인부

에서 리토을 청해 임명 하계해달라고 주접 하였습니다.....건륭33년 12월10일
에 주접한 것에 대한 유지: 논의한 것에 따라서 명액을 말했다. 이것을 종인부에
전달해라.²²

본 주접은 건륭제 시기 청조의 종실조직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는 과정
을 보여준다. 乾隆21년(1756) 북경에는 약2천여 명의 종실이 있었고 황제는
경성 내 종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遠支宗室 족장위에 總族長직
을 설립하였다. 遠支宗室 총족장의 명액은 총14명으로 양황, 정황기는 각 1
명, 나머지 기는 각 2명씩 선출하였다. 乾隆25년(1760)에는 종실을 16개의 종
실 니루로 독립 편성하고 각 니루 마다 종실좌령을 임명하여 관리하게 하였
다. 總族長과 종실니루의 좌령 임명 절차는 종인부에서 후보로 선발하고 황제

22 檔號:03-0183-2291-019, 「奏報盛京皇族覺羅編佐領鑄印設族長章京以管理折」, 軍機大臣
傳恒, 乾隆33年12月10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aliha bithe da hiya kadalara dorigi amban tondo baturu gung amban fuheng sei ging-
guleme weisimburehe:gemun hecen i uksun sa daci inu umai uheri mukvn i
da sindafi cohotoi kadalalahkv, abkai wehiyehe i orin emuci aniya uksun be kadalara
yamun ci jakvn gvsai uksun wang ci fusihvn ilan se ci wesihun juwe minggan funcere
niyalma bi cohodoi kadalara niyalma akv seme hese be baime wesimbufi kubuhe
suwayan gulu suwayan de gvsa tome emte funcuhe gvsade gvsa tome juwete uheri
mukvn i da sindafi kadalabuha abkai wehiyehe i orin sunjaci aniya amban meni baci
hese be dahame uksun be kadalara yamun i emgi acafi gisurefi gemun hecen de bisire
uksun sabe gemu gvsai niru booi niruci tucibufi, juwan ninggun uksun nirui janggin
nonggime sindafi kadalabuki seme wesimbufi yabubuha. ere uheri mukvn i da sinda-
ra de uksun i dorgi niyalma ojoro kadalame mutere ambasa hafasai dorgici sonjofi
sindambi, uksun i nirui janggin sindara de ne tuxan i duici jergici wesihun hafan
janggisai dorgici sonjofi sindambi, niyalma baharakv oci, sunjaci jergi hafasai dorgici
sonjofi untuhun duici jergi jingse xangnafi hadabume an i da fulun ulebume nirui
baita be kadalabumbi. umai fulun nonggiha ba akv, de uksun be kadalara yamun ci
mukdende bisire duin tanggv funcere uksun gioro sabe tubai geren gvsai niruci tuc-
ibufi, uheri mukvn i da emke, gala tome emte uksun nirui janggin sindafi kadalabuki.
uheri mukvn i da nirui janggin sindara de mukden i jiyanggiyvn de afabufi munggan
de alifi wecere uksun janggin sai dorgici niyalma derengge kadalame muterengge be
oron tome emte niyalma be dahabume benjifi uksun be kadalara yamun ci gaifi beye-
be tuwabume sindaki seme wesimbuhengge,....., abkai wehiyehe i gvsin ilaci aniya
jorgon biyai juwan de wesimbuhade hese: gisurehe songkoi obu sehe., erebe uksun be
kadalara yamun de afabu.

에게引見한 후 선발하였다. 선발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總族長은 現職 大臣, 종실좌령은 4품 혹은 5품 이상의 관원이었다. 乾隆33년(1768)에는 總族長, 종실니루의 좌령, 족장에 이르는 종실 관리체제를 성경종실에도 적용하였다. 성경에 거주하는 약400여명의 종실 및 각라를 관리하기위해 總族長 1명을 두었고 좌우翼에 각 1명의 종실니루의 좌령을 선발하였다. 또한 성경의 총족장과 종실니루의 좌령도 성경장군의 추천을 받아 종인부에서 심사한 후 황제에게 引見한 후 임명되었다.²³ 황제의 종실족장 선발에 대한 직접적 관여는 遠支宗室에 그치지 않았다. 乾隆40년 恒親王 弘晔의 아들 永皓와 公의 작위를 받는 弘升의 아들 永澤이 건륭제와의 引見에서 만주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건륭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近支宗室에도 족장을 선발하여 족장에게 만주어를 교육하게 하였다.²⁴ 이때 설립된 近支宗室 족장은 좌익2명, 우익 4명 총 6명이 선발되었다. 近支宗室 족장의 선발 대상은 왕, 貝勒, 貝子 중에서 황제가 직접 선발하였다.²⁵ 이듬해 건륭제는 총족장 선발과 마찬가지로 遠支宗室의 족장 선발에서도 관품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건륭41년 10월7일의 유지가 내려온 것. 誠恪親王 弘暢(hvng cang) 이 말하길: “遠支宗室의 족장 자리가 생기면 규정에 따라 해당 지파에서 추천한 사람만 선발되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선발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족장은 무권의 전체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관리하는 방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후 遠支宗室의 족장 자리가 나면 한 기의 종실(총족)안에서 관직이 비교적 높은 자를 선발하여 引見한 후 임명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모든 閑散종실족장을 소속 관청에 명하여 분명하게 조사하게 하고, 즉시 이 규정에 따라 비교적 지위가

23 『清高宗實錄』卷824, 乾隆33年12月9日.

24 『清高宗實錄』卷992, 乾隆40年10月7日.

25 (嘉慶)『欽定大清會典事例』卷5, 「宗人府五」, 「授官」, 「補放族長教長」.

높은 자로 바뀌서 임명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이것을 원래 주절과 함께 종인 부에 전해라.²⁶

옹정12년 이후 遠支宗室 족장의 선발은 해당 지파에서 족장 후보자를 추천 하게하고 종인부의 심사를 거쳐 황제의 引見을 거쳐 최종 임명되었다. 그러나 弘暢이 지적한 것처럼 추천 대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각 종족에서 자의적으로 원하는 자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결과 여전히 종족을 교화시키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자가 족장이 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청조는 관품이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기준으로 족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건륭제의 유지에 따라 청조는 遠支宗室 족장의 경우 3품 이하의 현직 대신 중에서 선발하게 하였다. 總族長은 現職大臣이라는 모호한 규정에서 3품 이상의 大臣이라는 보다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였다.²⁷ 이후 遠支宗室 족장은 3품 이하의 관원이라는 규정에 따라 선발한 결과 侍衛²⁸들이 주로 족장으로 선발되었다. 가경제는 낮은 등급의 侍衛로는 각 지파에 있는 왕공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遠支宗室 족장 선발 대상을 3품 이하의 현직관원에서 5품 이상의 종실侍衛, 다시 말해 三等侍衛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하게 하였다.²⁹ 이는 遠支宗室족장의 선발기준을 최저관

26 檔號:03-18-009-000041-0002, 「為葉爾羌弘暢奏遠族族長出缺著選同旗族內大員引見補放事」, 弘歷, 乾隆41年10月7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abkai wehiyehe i dehi emuci aniya juwan biyai ice nadan de hese wasimbuhanngge, yargiyangga giyvn wang hvng gang goro uksun i mukvn i da i oron tucici, kooli songkoi gargan i teile bodome niyalma sonjoro de asuru niyalma baharakv,……, mukvn i da serengge mukvn i gubci urse be tacibume kadalara tusa i niyalma ojoro kadalame muterengge be sonjoci acambi, ereci Julesi goro uksun i mukvn i da i oron tucici, emu gvsai uksun kai dorgici hafan ambakan ningge be sonjofi gaifi beyebe tuwabufi sindakini……, ne bisire sula uksun mukvn i da be harangga yamun de afabufi getukeleme baicafi uthai ere songkoi ambakan hafan halafi sindakini sehe., erebe da bukdari i sasa uksun be kadalara yamun de afabuha.

27 (嘉慶)『欽定大清會典事例』卷5, 「宗人府五」, 「授官」, 「補放族長教長」.

28 頭等侍衛3品, 二等侍衛正4品, 三等侍衛正5品, 藍翎侍衛正6品.

29 『清仁宗實錄』卷185, 嘉慶12年9月21日.

품을 기준으로 삼아 지위가 높은 자를 족장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아울러 總族長의 선발 대상도 기존3품 이상에서 1-2품 現職大臣 중에서引見을 거쳐 선발하였다.³⁰

3. 종실족장 관료화의 의미

청조의 황제는 북경과 성경의 總族長과 족장 선발 과정에 직접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선발 대상의 품급을 점차 상향하여 족장의 공적지위를 높였다. 심지어 道光5년(1825)에는 종족 중 現職官員이 없는 경우, 족인이 아닌 자를 임시로 족장에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³¹ 이처럼 청조가 족장 선발에 직접 관여하고 現職官員을 우선 하였던 것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 이유를 족장의 팔기행정 참여에서 찾고자 한다. 청조는 일찍이 雍正7년(1729) 종실 기오로 족장에게 印章을 지급하였다. 印章은 관리가 해당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청조가 종실 기오로 족장에게 印章을 지급한 이유는 종실 기오로 족장에게 족인의 호구 조사권한을 위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청조가 종실족장 선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전부터 종실, 기오로 족장은 이미 일차적으로 팔기 행정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건륭제는 종실족장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족장을 하나의 관직처럼 표현하기도 하였다.

종인부의 종실관원뿐만 아니라 무릇 종실이 있는 해당 아문들은 모두 불시에 조사해야 한다. 만약 실제로 불효자가 있다면 즉시 이에 따라 주접하여 알려 종실들을 훈계해야 한다. 종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집의 일이지만 집이 각종 정무를 처리해야 하니 어찌 틈이 있겠냐? 게다가 종인부에는 족장직이 있

30 (嘉慶)『欽定大清會典事例』卷5, 「宗人府五」, 「授官」, 「補放族長教長」.

31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卷5, 「宗人府五」, 「授官」, 「補放族長教長」: “道光五年諭, 族長有約束教導之責, 必須諳練事體方於族務有裨, 嗣後著仍由該族內世職章京與現任職官, 無論品級秉公揀選, 帶領引見, 儻該族現無官員, 則以別族之員揀選暫署, 俟本族升有職官, 再行引見補放, 其學長缺仍由宗人府照例挑補.”

으니 앞으로는 반드시 짐이 종실을 교양하는 뜻에 따라 더욱더 엄밀히 살피고 관리해라 절대로 태만해서는 안 된다.³²

건륭제는 유지에서 족장을 ‘族長職’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족장의 임무는 자신의 뜻에 따라 족인을 엄밀히 교양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왜 정식 관료가 아닌 족장에게 이러한 책임을 부여했을까? 족장을 설립한 이유에 대한 가경제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청조황제의 의중을 살펴볼 수 있다.

니루의 좌령, 족장을 만든 것은 특별히 기인을 교화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니루의 좌령 족장의 눈과 귀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관찰하는 사람들을 감찰하는 것이 아주 쉽다.³³

가경제는 유지에서 니루의 좌령과 족장의 역할을 동일시하며 그들의 임무는 가장 근거리에서 기인들을 관속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조의 통치자들이 기인의 교화를 중시한 이유는 기인은 만주정권을 유지하는 근간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기인은 다양한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만주공동체의 규범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 만주공동체의 주요 규범은 바로 ‘國語騎射’, ‘淳樸’, ‘節儉’과 같은 황제가 제정한 만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니루 설립 초기에는 니루의 인구가 많지 않았고 좌령과 각 무쿤의 족장 간에 혈연 및 지연관계가 밀접하였다. 그러나 니루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입관 후 자의든 타의든 니루 구성원들의 거주지 분산이 확대 되었고 좌령과 족장 간의 혈연

32 『淸高宗實錄』卷177, 乾隆七年十月二十七日: “不但宗人府之宗室官員, 凡宗室之內該衙門俱應不時稽察, 如實不孝不弟之人, 即照此嚴行參奏, 以為宗室等戒, 教訓宗室雖系朕躬之事, 但朕日理萬幾, 又安得有此暇耶, 且宗人府即有族長之職, 嗣後務體朕教養宗室之至意, 時加稽察嚴行管束, 斷不可怠忽.”

33 档号: 03-18-009-000060-0002, 「為覺羅兆穎等與乞巧混居著交該旗查明失察佐領族長名銜交部議處事」, 颯琰, 嘉慶8年5月26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nirui janggin mukvn i da be ilibuhangge cohome gvsai urse be tacibukini kadalakini sere jalin, nirui janggin mukvn i da i xan yasa umesi hanci be dahame, harangga kadalara urse be baicara de nokai ja.”

및 지연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령 만으로는 전체 니루의 구성원을 관리하고 관속하기 어려웠다.³⁴ 청 황제는 족장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족장에게 족인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팔기의 행정업무를 분담하게 하였다. 따라서 청 황제는 족장선발에 있어서 족인의 관리능력과 더불어 실무 경험이 있는 現職官員을 족장으로 선출한 것이다.

종실족장 선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황제의引扈를 거쳐 선발한다는 점이다. 引扈는 관리를 선발하는 절차 중 후보자를 황제에게 알현 시켜 황제의 의증을 묻고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팔기는 본래 각 旗별로 독립된 단위였고 각 旗에 속한 기인들은 旗主의 사적 지배를 받았다. 종실 족장 또한 각 지파의 종실왕공들의 영향력 속에 있었다. 따라서 황제의 引扈를 통한 종실족장 선발은 황제와 종실족장 사이에 직접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청조 황제가 종실족장의 선발에 관여하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 황제가 종실집단을 장악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옹정제 시기 성경종실족장 선발에 관여한 것을 시작으로, 북경의 遠支종실은 보다 직접적으로 황제의 引扈를 거쳐 선발하였다. 건륭제는 각 지파의 추천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품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후보를 추천하게 하였다. 또한 족장 선발에 관여하는 범위가 近支宗室까지 확대되었다. 아울러 선발대상에 대한 관품규정변화 이유를 보면 황제와 종실사이에 미묘한 권력 투쟁 양상이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乾隆41년(1776) 청조는 遠支족장의 階에 3품 이하의 관원 중에서 선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遠支종실은 지위가 낮은 侍衛를 족장으로 임명하여 종실족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가경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34 가경조에 이르면 종실의 거주지 분산 문제는 심화되어 임의로 거주지를 이탈하여 성 밖에 거주하는 종실도 있었다. 청조는 종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총족장과 족장에게 성 밖으로 이주한 종실을 조사하여 다시 성내로 이주하게 하였다(『清仁宗實錄』卷44, 嘉慶4年5月3日; 『清仁宗實錄』卷350, 嘉慶23年11月26日).

족장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5품 이상의 관원으로 선발 대상을 재조정하였다. 즉 옹정제 이후 가경제에 이르기까지引冕을 통한 족장 선발과 선발 대상의 구체적 관품에 관한 규정은 족장의 관료화를 통해 종실집단에 대한 황제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이었다.

III. 종실족장의 八旗행정 임무와 권한

건륭제 이후 종실족장 선발원칙은 종족 중 官品이 높은 자를 황제의 引冕을 거쳐 선발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종실족장은 종실사회를 다스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한이 있었을까? 본고에서 실질적 사례를 통해 종실족장이 八旗행정에 어떠한 임무와 권한을 갖았는지 살펴보겠다. 아래 주점은 乾隆26年(1761) 성경에 있는 閑散覺羅 額立錦 등이 자신의 족장인 訥爾部가 저지른 여섯 가지 만행을 고발한 것이다. 본 송사 안건을 통해 종실, 기오로 족장의 임무와 권한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9월 11일에 閒散기오로 額立錦(ulgijen), 필첩식 기오로 derengge가 부에 와서 함께 보고한 것, 저의 기오로 무쿤의 수장에 있고 현직 昭陵總管인 訥爾部(nerbu)가 힘에 기대어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행하고 우리를 다치게 한 것이 오래되어 한마디로 끝내지 못합니다. 額立錦(ulgijen), derengge 저희는 다만 그의 아버지와 자식이 행한 일 여섯 가지를 나열하고 진술하여 소송하였습니다.

1.-項, 쌀을 구휼하는데 訥爾部(nerbu)가 사적으로 保寧(booning)의 노복 張國靑(jang guwecing)의 한 지파 총 44명을 암암리에 다른 호가되게 하고 (호)책자에 포함시켜 거짓으로 쌀을 얻었습니다.

2.-項, 건륭25년, 하반기 전량을 받으러 가는데 訥爾部(nerbu)가 권력을 이용해 저희의 전량과 은 등을 강제로 공제하였습니다.

3.-項, 저의 할아버지가 남긴 무덤을 지키는 한 지파의 노복을 訥爾部(nerbu)가 족장의 지위로 붙잡고 교만하여 사사로이 바뀌서 자신의 큰아들인 豐升額

(fengxengge)의 이름 아래 두었습니다.

4.一項, 저의 둘째 큰 할아버지 jerihe의 후사가 단절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토지를 訥爾部(nerbu)가 자신의 아들 朱蘭泰(julantai)에게 물려받게 하고 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였습니다.

5.一項, 訥爾部(nerbu)는 자신의 아들 朱蘭泰(julantai)가 사사로이 柵欄을 넘어서 닝구타에 간 연유로 질책을 받고 관직에서 파직된 자인데 訥爾部(nerbu)는 이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재차 비호하여 朱蘭泰(julantai)가 覺羅學의 副教長이 되게 하였습니다.

6.一項, 保寧(booning)은 사사로이 불법으로 경성에서 도망쳐온 사람입니다. 족장 訥爾部(nerbu)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숨겼고 결코 드러내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이상 여섯 가지를) 보고했었습니다. 신이 조사하여 閑散기으로 額立錦(elgijen), 필첩식 기으로 derengge가 원한으로 소송한 것이 있더라도 다만 總管 겸 족장인 기으로 訥爾部(nerbu)를 각 항목별로 나열하여 적고 소송한 문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삼가 자세히 살펴 주접 하였습니다. 성군의 지시와 가르침을 받은 후 삼가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기으로 額立錦(elgijen) 등의 보고된 한문 소송장을 필사하여 함께 보고 아뢰었습니다. 유지를 청합니다.

건륭26년 10월1일에 유지: 유지를 내렸다.³⁵ (각 항목의 번호는 필자)

35 档号:03-0179-1895-018(060-3133), 「奏盛京鑲黃旗額立錦等控告昭陵總管並覺羅族長訥爾布仗勢妄行折」, 盛京刑部侍郎朝銓, 乾隆二十六年九月十六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te uyun biyai juwan emude sula gioroi elgiyen bithesi gioroi derengge jurgan de jifi alibuhangge meni gioroi mukvn i da bime ne tuxan i eldengge munggan i uheri da nerbu horon hvsunde ertufi fafun kooli be daharakv gvnin i cihai balai yabume membe jocabuhangge aniya goidame emu gisun de wacihiyame tucibume muterakv, elgiyen derengge be damu ini ama jui i yabuha baita be ninggun hacin faidame arafi tucibume habxaha. emu hacin bele salame aitubure de nerbu cisui booning ni booi aha jang guwe cing ni emu uksura uheri dehi duin anggala be hvlhame encu boigon obufi cesede dosimbufi holtome bele gaiha, emu hacin abkai wehiyehe i orin sunjaci aniya bolori forgon i caliyon gaire de nerbu elgiyen mini caliyon menggun be horon de ertufi ergeleme tebuhe, emu hacin elgiyen mini mafa i werihe eifu tuwakiyara emu uksura aha be nerbu mukvn i da i temgetu jafaha de ertufi cisui halafi ini ahvngga jui fengx-

이상 족장 訥爾部的 여섯 가지 항목의 만행을 통해 당시 종실 및 기오로 족장의 권한 및 임무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종실 戶口조사 및 등재권 ②팔기 錢糧 및 보조금 수령 ③宗族 간 분쟁 해결 ④宗族 내 위법자 보고 등이다.

1. 종실 戶口 조사 및 등재권

이상 족장 訥爾部的 여섯 가지 만행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을 보면 訥爾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족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호구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 밑에 두어 이득을 취하였다. 이는 종실족장이 실제 족인의 호구를 조사하고 등재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청조는 일찍이 順治9년부터 종실 및 기오로의 족장에게 족인의 호구를 조사하여 종인부에 보고하게 하였다. 종실 및 기오로 족장의 호구 조사 및 등재의 임무는 단순히 보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록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雍正7年 청조는 종실 및 기오로 족장에게 印章을 지급하였고, 족장은 戶口冊에 자신의 印章을 찍어 보고한 내용을 보증하였다. 청조는 戶口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족장에게 보고한 戶口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진위여부를 묻고 확인하게 하였다.

engge i gebui fejeri de obuha, emu hacin mini jacin amji mafai jerihe enen lakcaha usin be nerbu ini jui julantai salifi cisui niyalma de bojilaha ucaha. emu hacin nerbu i jui julantai cisui jase dabafi ningguta de genehe turgunde wakalabufi hafan efulehe niyalma bime nerbu gidame daldafi, dasame akdulafi gioroi tacikvi aisilame kadalara da de gaiha, emu hacin booning cisui gemun hecen ci ukame jihe niyalma mukvn i da nerbu iletu sambime gidame daldafi umai tucibume boolahakv seme alibuhabi. aha bi baicaci sula gioroi elgiyen bithesi gioroi derengge uttu kimun de habxaha bicibe damu uheri da bime mukvn i da gioroi nerbu be hacin faidame arafi habxame bithe alibuha be dahame, gingguleme narhvxame wesimbuhe, bairengge enduringge ejen jorime tacibuha manggi gingguleme dahame icihiyaki. uttu ofi gioroi elgiyen sei alibuha nikan hergen i alibun be sarkiyame arafi suwaliyame tuwabume wesimbuhe hese be baimbi. abkai wehiyehe i orin ningguci aniya juwan biyai ice de fulgiyan fi i pilehe hese, hese wasimbuha sehe. uyun biyai juwan ninggun.

종인부 종령 화석장친왕 신 綿課 등이 삼가 주접하여 아뢰입니다.

(가경제의) 유지: 종실기오로는 한인과 혼인을 할 수 없다. 지금 종인부에서 알려오길 성경으로 이주한 종실의 호구명단에 (그들의)부인의 성씨가 장씨, 이씨, 백씨, 진씨로 적혀있다. 이들이 漢軍인지? 그렇지 않으면 漢人인지? 그 關氏가 혹은 瓜爾佳氏인지? 童氏가 佟佳氏인지? 또한 마땅히 본래의 성씨로 쓰야지 한족의 성씨로 잘못 기재해서는 안 된다. 너 종인부는 일일이 조사해서 밝혀라……, 이를 준수해라. 신들은 즉시 명을 각 종족에 보내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각 종족의 족장들이 이주종실 부인의 성씨를 조사한 것을 먼저 보고해왔습니다. 신 등이 살펴보기에 이주 종실70호 가운데 한인과 통혼한 자가 없었습니다……, 신들이 각 족장에게 거듭 엄히 타이르고 명하여 규정에 따라 한인과 통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외에 다시 널리 조사하게 하였고, 나머지 종실, 기오로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 부인의 성씨는 아직 다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다시 주접하여 아뢰겠습니다. 삼가 주접하였습니다.³⁶

가경제는 盛京으로 이주할 종실들의 戶口單을 보고, 종실 부인들의 성씨가 한족의 성씨로 기재된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들이 혹시 漢人和 聯姻하였는지 조사하게 하였다. 宗人府 宗令 綿課 등은 명을 따라 즉시 해당 戶口單을 보고한 족장에게 戶口單에 기록된 내용의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족장들의 보고를 통해 성경으로 이주한 종실들 모두 한인과 통혼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각 족장들에게 재삼 명하여 이후에도 종실이 한

36 「宗人府宗令綿課為遵查移住盛京宗室並無與漢人聯姻事奏折」, 嘉慶18年6月17日, 「嘉慶朝宗室移住盛京檔案(上)」, 『歷史檔案』2, 2019, 38쪽.

宗人府宗令·和碩莊親王臣綿課等謹奏, 為奏聞事。

奉上諭: 宗室覺羅定例不準與漢人聯姻。本日宗人府奏移居盛京宗室戶口單內開寫妻室氏族內有張氏、李氏、白氏、陳氏, 是否漢軍, 抑系漢人, 其關氏或系瓜爾佳氏, 童氏或系佟佳氏, 亦當照本姓書寫, 不應訛為漢姓。著宗人府逐一查明, ……。欽此。欽遵。臣等即傳令各該詳查去後, 今據各該族長等將移居宗室妻室氏族先行查明呈報前來。臣等查, 移居宗室七十戶內尚無漢人聯姻之人……, 彼時未照本姓呈報書寫, 以致訛為漢姓。臣等仍嚴飭各該族長等, 將例不準與漢人結親之外, 重行宣示詳查外, 其餘宗室覺羅人數頗多, 其妻室氏族尚未查明, 俟查明之日再行奏聞。為此謹奏。

인과 통혼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나머지 종실의 戶口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하였다. 이처럼 족장은 호구조사 및 등재권한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당시 국정운영에서 족장은 戶口관리와 관련된 사안의 실무자로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팔기 錢糧 및 보조금 수령

족장 訥爾部的 여섯 가지 만행 중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족장은 청조가 팔기에게 지급하는 錢糧 및 보조금을 대리 수령하여 족인에게 배분하는 임무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기인은 사적으로 상업에 종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俸祿과 錢糧 그리고 旗地에서 나오는 수익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했다. 입관 후 수많은 기인이 旗地를 전매하여 소유권을 잃은 상황을 고려하면, 대다수 기인은 錢糧이 유일한 정기 수입원이었다. 따라서 족장이 족인의 錢糧 수취 및 배분권은 족인에 대한 경제적 제약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었다. 일부 족장은 위의 사례처럼 자신의 권한 악용해 족인을 억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족장이 족인의 경제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팔기의 紅白事恩賞銀 지급이다. 다음 사료는 종실이 紅白事보조금을 수령하는 과정과 족장의 역할에 대한 주접이다.

주접한 것

종인부의 일을 자세히 조사하는 監察禦史 종실 崇揚赫(cung yang he)가 삼가 주접한 것……, 지금 종실들의 紅白事に 銀을 상으로 주는 것은 특별한 일에 이익이 되게 합니다. 일이 임박했을 때 막히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에 이르지 않게 한다고 또한 보고하였습니다. 종실은 紅白事가 발생하면 먼저 족장에게 보고합니다. 족장은 니루의 좌령, 부니루 좌령, 효기교 등에게 알리고 함께 보증하여 참령에게 문서를 보내 알립니다. 참령이 기의 대신들에게 보고하고, 인장을 찍어 종인부에 문서를 보냅니다. 몇몇 기는 반달 만에 보낸 것이 있고, 또 한 달여 만에 보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일이 발생했

을 때 빠르게 얻지 못 합니다. 임무를 맡은 자는 항상 이자를 주고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급하지 않습니다. 종실의 紅白事는 사람들을 속여 사적인 폐단을 일으키는데 적합한 일이 아닙니다. 白事가 발생하면 종인부에 보고하고 전량을 정지시킵니다. 紅事가 발생하면 종인부에서 장경을 파견해 조사하게 합니다. 따라서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지금 종실 족장에게 關防(印)을 주었기 때문에, 이후 종실의 紅白事가 있으면 즉시 족장에게 알리고, 족장은 들은 것을 보고 즉시 스스로 가서 확인한 후 족장, 敎長이 함께 보증하여 關防(印)을 찍고 종인부에 문서를 보내 알리게 합니다. 종인부에서는 규정을 조사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면 즉시 기한 안에 지급하게 해서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게 합니다. 恩賞銀을 빠르게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어전의 두터운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고, 일이 닦친 집 또한 반드시 이자를 주고 은을 빌리는 곳에서 빚을 지게 하여 초초하게 하는데 이르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삼가 주접하였습니다. 明監하여 주십시오.³⁷

37 檔號:04-02-002-000159-0003, 「無題」, 監察禦史宗室崇揚赫, 雍正八年三月四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wesimburengge,

zung r'in fu yamun i baita hacin be kimcime baicara baicame tuwara hafan amban uksun i cung yang he gingguleme wesimburengge……, te uksun sei fulgiyan xanggiyan baita de kesi menggun xangname burengge, cohome baita de tusa okini, baitai nergin de hanggabure gacilabure de isinarakv okini sehengge, damu uksun sei fulgiyan xanggiyan baita tucike de, neneme mukvn i da de alambi, mukvn i da, nirui janggin, ilhi nirui janggin, funde boxokv sede alafi uhei akdulafi, jalan i janggin de bithe alibumbi, jalan i janggin g'ao weilefi, gvsai ambasa de tuwabufi, doron gidafi teni ulame zung r'in fu yamun de bithe yabubumbi, ememu gvsa hontoho biya yabuburengge inu bi, biya funceme yabuburengge inu bi, uttu yabubuci inenggi goidame bime, baitai nergin de la li seme baharakv ofi, baita aliha niyalma kemuni madagan bume ba bade juwen gaimе facihiyaxara de isinambi, uksun sei fulgiyan xanggiyan baita serengge, niyalma be daldara, cisui jemden yabuci ojoro baita waka, xanggiyan baita oci zung r'in fu yamun de boolafi ciyanliyang meitembi, fulgiyan baita oci, zung r'in fu yamun ci janggisatucibufi baicabumbi, uttu ofi, amban mini mentuhun gvni de, ne uksuni mukvn i da sede guwan fang buhe be dahame, ereci amasi uksun sei fulgiyan xanggiyan baita bici, uthai mukvn i da de alafi, mukvn i da donjiha be tuwame uthai beye genefi yargiyalafi, mukvn i da, tacibure da uhei akdulafi guwan fang gidafi, zung r'in fu yamun de bithe alibufi, zung r'in fu yamun kooli be baicafi, giyan i bahabuci acara oci, uthai bilagan i dorgi de bahabure ohode, inenggi biya goidabarakv, kesi menggun la li seme

雍正3年(1725), 종실 崇揚赫의 주접을 통해 종실은 경조사가 있으면 먼저 족장에게 보고해야 했고, 족장은 족인의 보고를 확인한 후 니루에 보고하였다. 좌령은 족장의 보고를 바탕으로 참령에게 보고하여 최종적으로는 종인부에 보고되었다. 이처럼 기인의 호구 등재뿐만 아니라 恩賞銀 지급과 같이 팔기의 행정사무는 족장에서 시작되었다. 崇揚赫은 현재 종실의 恩賞銀 신청과 지급과정이 족장-→좌령-→참령-→팔기아문-→종인부의 보고계통을 거칠 경우 시일이 지체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족장이 직접 자신의 인장을 찍어 종인부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자고 하였다. 기존정책과 변화된 정책을 통해 우리는 팔기의 각종 행정절차의 시작이 족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족장은 팔기행정처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인장을 통해 보증하는 등 강화된 권한만큼 책임도 수반하였다. 만약 보증한 내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참령이하 니루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비정식 관원인 족장도 함께 처벌받았다.

3. 宗族 간 분쟁 처리

종족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족장이 주재하는 종족회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였다. 만약 족인이 家規를 따르지 않고 관에 먼저 고발하면 종족회의를 통해 오히려 고발한 족인이 처벌받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종족 내부의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건은 재산에 관한 것이다. 이상 족장 訥爾部的 여섯 가지 만행 중 네 번째 항목을 보면, 족장 訥爾部은 額立錦의 큰 할아버지 jerihe가 후사가 없이 사망하자 그가 남긴 토지를 임의로 자기 아들인 朱蘭泰(julantai)가 물려받게 하였다. 이는 종족 내부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족장의 권한이 컸음을 보여준다.

bahaci ojoro be dahame, ejen i ujen jiramin kesi ele iletulembime, baita aliha boo inu ainaha seme madagan bume ba bade juwen gaime facihiyaxara de isinarakv ombi, erei jalin gingguleme wesimbuhe, genggiyen i bulekuxefi yabubureo.

4. 宗族 내부 위법자 보고

족장 訥爾部的 여섯 가지 만행 중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항목을 보면, 족장 訥爾部는 아들 朱蘭泰(julantai)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파직되었다는 사실을 은닉하였고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副教長에 임명되게 하였다. 경성에서 사적으로 도망쳐온 保寧(booning) 또한 은닉하고 니루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두 고발 사항에서 족장은 죽인 혹은 자신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외부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니루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족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는 관에 먼저 보고하는 것이 아닌, 족 종족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당시 사회 관행이었다. 그러나 만주공동체의 규정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족장은 설사 그 대상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실을 니루에 알려야했다. 가령 이상 족장 訥爾部的 두 가지 만행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법행위는 바로 종실이 사사로이 거주지를 이탈한 문제이다. 기인 및 종실은 사사로이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었고 필요시에는 수속을 밟아 허가를 구해야했다. 관원은 도통을 통해 병부를 거쳐 통행증을 받아야했고 領催, 馬甲과 같은 팔기 官兵은 소속 참령에게 印票를 발급받아야 했다. 전봉과 호군은 소속된 곳에서 印票를 발급받아야 했다. 관원이 아닌 閑散인 자는 소속 좌령에게 좌령의 圖記가 찍힌 印票를 발급받아야 했다.³⁸ 경사기인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이주한 종실 또한 사적으로 영외에 나갈 수 없었다. 급히 영외로 나갈 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종실 영의 관원에게 보고한 후 출영을 허가받아야 했다.³⁹ 만약 이러한 규정을 어긴 것을 은닉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소관 팔기관원은 물론 족장도 함께 책임을 져야했다.

38 杜家驥, 2015, 『清代八旗官制與行政』,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29쪽.

39 「著和寧等飭知沿途各地方官預為尋覓房間安置移住盛京宗室等事上諭」, 嘉慶18年8月初10日, 「嘉慶朝宗室移住盛京檔案(上)」, 『歷史檔案』2, 2019, 40쪽.

거듭 유지를 내렸다. 綿課 등이 재차 주접하여 종실 綿遜이 사사로이 산동에 간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아뢰고 각각 엄히 처분해줄 것을 청하였다. 綿遜이 사사로이 출경한 것이 혹 빈곤과 질병으로 인해 도성부근 그 집에서 몇 일간 은신하려고 하였던 것인지? 혹은 둘러대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지금 綿遜이 멀리 산동으로 가서 반드시 여장을 꾸리는데 비용이 필요했을 것이다. 근대 어찌 처자식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관 족장 奕紹는 어찌 일전에 조사하여 보고할 때 학장 綿靑, 綿榜의 보고에 기대어 어디에 갔었는지 제대로 모르고 보고하였고 또한 자세히 규명하지 않았나?…… 綿課 등이 스스로 부에 전달하여 엄히 처벌할 것을 청해왔다. …… 奕紹는 소관 족장이다. 너에게 貝子의 봉록을 1년 치를 벌한다. 또한 다시 부에 전달해 의논할 필요 없다.⁴⁰

종실 綿遜은 산동에서 발생한 소송안건에 관여하기 위해 사사로이 出京하였고 그 사실이 발각되었다.⁴¹ 이상 주접 내용에서 보듯 가정제는 綿遜의 소관 팔기 관원들뿐만 아니라 그의 족장인 奕紹까지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처럼 종실족장은 족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니루의 관리들과 함께 실질적 책임 및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족장은 본인은 물론 종족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야 했다.

IV. 맺음말

종실은 황제의 배후 집단으로 그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였다. 만약 거대한 권력집단인 종실이 부패하고 황제가 이를 적시에 제어하지 못할 경우 왕조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 황제들은 종실교화에 힘썼고

40 『清仁宗實錄』卷263, 嘉慶17年11月29日: 又諭, 綿課等覆奏, 失察宗室綿遜私赴山東, 請分別議處嚴議一折. 綿遜私行出京, 或因貧病在都城附近地方潛匿數日伊家, 或可諉為不知, 今綿遜遠赴山東, 自必束裝措費, 豈有不告知妻孥之理, 乃該族長奕紹前此查傳時, 僅據學長綿靑, 綿榜以不知去向呈報, 並不詳細根究, …… 綿課等自請交部議處及嚴議之處……, 奕紹系該管族長, 著罰貝子俸一年, 亦毋庸再交部嚴議.

41 『清仁宗實錄』卷263, 嘉慶17年11月28日.

종실교화 임무의 선봉에 족장이 있었다. 청조의 종실족장 선발은 종족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었다. 옹정조이래 청 황제들은 종실족장선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건륭제와 가경제 시기를 거쳐 종실족장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수립되었는데 遠支宗室의 총족장과 近支宗室의 족장은 현직 1-2품 종실대신 중에서 선발하였다. 遠支宗室의 족장은 각 기별로 현직 5품 이상 종실시위장경 중에서 선발하게 하였다. 아울러 선발과정에서 황제의引見을 거쳐 임명하게 하였다. 청조의 통치자가 정식 관료가 아니어도 불구하고 종실족장선발에 관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종실집단에 대한 황제의 영향력 강화이다. 옹정제가 성경족장 선발에 개입한 것을 시작으로 건륭제 시기에 이르면 북경의 近支종실 선발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종실의 변방집단에서 황제의 근친인 핵심집단까지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한 것이다. 또 ‘引見’이라는 관리 선발방식을 통해 황제가 종실족장과 직접적 유대 관계를 형성할 계기를 마련하여 황제의 종실족장에 대한 인적지배를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는 족장이 팔기의 각종 행정사무의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종실족장의 임무에서 보듯 종실족장은 자신의 족인에 대해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울러 족장은 보고서에 자기 인장을 찍어 팔기관원들과 함께 보증해야 했다. 따라서 청조는 니루에서 각종 행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종족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려고 하였고 객관적인 지표인 관품이 높은 자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 『钦定大清会典则例』(南開大學資料庫)
- 『清世宗實錄』
- 『清高宗實錄』
- 『清仁宗實錄』
- 『清宣宗實錄』(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嘉慶朝宗室移住盛京檔案(上)」, 『歷史檔案』2, 2019
- 檔號:04-02-002-000155-0055, 戶部給事中兼護軍統領巴圖,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檔號:03-0170-0014-003, 「奏交宗人府揀選宗室覺羅之族長折」,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檔號:03-0183-2291-019, 「奏報盛京皇族覺羅編佐領鑄印設族長章京以管理折」,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檔號:03-18-009-000041-0002, 「為葉爾羌弘暢奏遠族族長出缺著選同旗族內大員引見補放事」,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檔號:03-18-009-000060-0002, 「為覺羅兆穎等與乞丐混居著交該旗查明失察佐領族長名銜交部議處事」, 顯琰, 嘉慶8年5月26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檔號:03-0179-1895-018(060-3133), 「奏盛京鑲黃旗額立錦等控告昭陵總管並覺羅族長訥爾布仗勢妄行折」,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檔號:04-02-002-000159-0003,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傅克東, 1983, 「八旗戶籍制度初探」, 『民族研究』6
- 常建華, 2017, 「有關明清家族制的是是非非」, 『古代文明』, 2
- 陳瑞, 2008, 「清代徽州族長的權力簡論」, 『安徽史學』4
- 馮爾康, 2008, 「清代宗族族長述論」, 『江海學刊』, 5
- 馮爾康, 2013, 『中國古代的宗族和祠堂』, 商務印書館
- 徐雪梅, 2018, 「清朝八旗制度中的族長」, 『人民論壇』2
- 何海龍, 2002, 「清代滿族民間宗法制度基本形態淺析」, 『滿族研究』4
- 謝肇華, 1993, 「從一份“家訓”看清後期滿族的族長制」, 『滿族研究』1
- 杜家驥, 2015, 『清代八旗官制與行政』,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杜家驥, 2016, 「清代滿族與八旗的關係及民族融合問題」, 『社會科學戰線』6
- 孟繁勇, 2016, 「清代宗室覺羅發遣東北述略」, 『社會科學戰線』8
- 王新璋, 2016, 「晚清近支宗室過繼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王躍生, 2016, 「清代立嗣過繼制度考察: 以法律, 宗族規則和慣習為中心」, 『清史研究』2
- 賴惠敏, 2010, 『清皇族的階層結構與經濟生活』, 遼寧民族出版社
- 趙志強, 2019, 「滿洲族稱源自部落名稱——基於「滿文原檔」的考察」, 『紀念鄭天挺先生誕辰120周年暨第五屆明清史國際學術討論會會議』, 南開大學
- 張佳生, 2010, 「八旗牛錄建制與滿洲之民族整合」, 『沈陽故宮博物院院刊』10
- 孫靜, 2005, 「滿族形成的再思考——清中期滿洲認同意思研究」, 復旦大學博士論文
- 王鐘翰, 1987, 「關於滿族形成中的幾個問題」, 『社會科學戰線』, 1
- 徐凱, 2015, 『滿洲認同“法典”與部族雙重構建: 十六世紀以來滿洲民族的历史嬗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마크C.엘리엇(Mark C.Elliott), 이훈·김선민 역, 2009,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Mark C.Elliott, 2001,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이매뉴얼C.Y.쉬(ImmanuelC.Y.Hsu), 2013, 조운수·서정희 역, 『근현대중국사-상: 제국의영광과 해체』, 까치(ImmanuelC.Y.Hsu,2000,*The Rise Of Modern China*.Oxford University Press)

투고일: 2020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5일

■ Abstract ■

Clan Leader Selection and Management of the royal family in Qing Dynasty

Kim, Jun-You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tudies of clan leader leadership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often focus on clan leader's activities such as ceremonies, property management and compilation of genealogy.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of clan leaders in the social organization of the Manchu community. According to the period of into bannerman and the type of Niru, Manchu community is divided classes. Among the various classes that make up the Manchu community, the royal family and ordinary bannerman differentiated based on a household registry, Niru composition and group management. This study sets the royal family as the primary group of interest in the Manchu Community. Using archives of the Qing Dynasty, it explores changes in clan leader selection processes, and clan leader's duties and authority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Eight Banners. The study found that the new clan leader's primary selection criteria were not their blood-based relations within the clan, but their public posts and the emperor's recognition. The emperor's direct involvement in the selection of clan leader (but not official bureaucrats) was two-fold: (1) it strengthened the emperor's influence over the royal family; and (2) the clan leader's responsibility in managing the people and implementing the edicts of the Eight-banner Administration within the Niru.

Keywords: Manchu Community, Royal family, Selection of the clan leader, Eight-banner administration, Niru, Role of clan leader.